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64
----------	------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6일 김인제 의원 (찬성 17명)
2.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6월 17일 상정· 의결 (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가. 최근 고(高)당류 간식의 유행으로 아동·청소년의 당류 과다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손목닥터 9988 앱 등)을 활용한 올바른 당 섭취 습관 형성 정책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 및 기여도에 따른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관리 사업을 영양관리사업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시민이 영양·식생활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국민영양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 ('25. 06. 03. ~ '25. 06. 07.)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의 ‘영양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관리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영양관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조례에 사업 참여 실적, 횟수 및 기여도 등과 연동되는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관리사업을 영양관리사업의
에 포함하는 사항 (안 제11조제1항제7호 관련)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 각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양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제11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① ----- -----. 1. ~ 6. (현행과 같음) <u>7.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관리 사업</u>

2) 검토의견

- 최근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정책’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구조’가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식생활’ 역시 ‘개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간편식, 외식, 가공식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간편식, 외식, 가공식품’ 중심의 변화가 ‘식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긍정적 측면 이외에도, ‘영양 관리 측면’에서는 ‘당류와 나트륨 등의 과다 섭취, 과일·채소 등의 섭취 저조’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증대시키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정책’의 주요 정책 방향성은 이러한 ‘당류와 나트륨 과다 섭취’ 등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방식으로 ①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인 식사 기록, ② 영양소 섭취량 분석, ③ 맞춤형 식단 안내 등의 영양 정보 전달, ④ 주기별 모니터링 및 맞춤형 피드백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정책 수단’에 더해 동 개정(안) 제11조제1항제7호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책 수단 도입’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고 사료됨.

나. 시민이 ‘영양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안 제11조제3항 관련)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제1항의 ‘영양관리사업’을 추진 할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하고자, 동 조례에 사업 참여 실적, 횟수 및 기여도 등과 연동되는 보 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①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 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 비,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u><신설></u>	<u>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 기 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u>

2) 검토의견

- 2025년 시민건강국 본예산 사업설명서(p.838)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인식 개선 (덜 달달9988)’ 사업 중 하나인 ‘덜 달달 원정대 참여자’에게 ‘사업 참여’ 관련 ‘인센티브’를 주고자 ‘기타 보상금’으로 약 1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보도자료] “서울시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로 우리 아이들 건강 지킨다…저당 식생활 확산” 2024. 9. 5.(목), 서울시 식품정책과
- ‘덜 달달 원정대’는 자녀가 부모의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물 마시기, 당류 함량 정보 확인하기 등 건강 식생활 행동 챌린지에 도전하여 저당 식생활 실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맞춤 프로그램임.
- 그리고 시민건강국은 사업설명서(p.838)에 동 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조례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이하 “신체활동 조례”라 한다) 제9조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신체활동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정의규정)과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제9조(비용의 지원) 규정을 종합하여 검토할 때, ‘덜 달달 9988 원정대’와 같은 ‘저당 식생활 실천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은 ‘몸을 움직이는 신체활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현행 신체활동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신체활동 조례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홍보 및 캠페인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4. 신체활동장려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용의 지원)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아울러 동 사업의 ‘조례 근거 불충분 문제’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회의에서도 아래와 같이 기 지적된 바 있음.

○ 김인제 위원: 그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보완해 줘야 될 사항은 사업설명서에 예산 지원 근거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9조로 얘기를 했어요. (중략)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따지면 건강의 신체활동과 관계된 거예요, 육체, 피지컬과 관계된 신체활동.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덜 달달 사업은 식품 개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서울시의 기존 조례를 따지면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한 예산범위가 돼야 돼요. (중략)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정을 한다든지 본 사업을 연속, 지속 또는 계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예산근거들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 조례와 관계된 사업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이라는 것의 목표와 정의에는 내가 지금 9988처럼 어디를 얼마나 걸었냐 이랬을 때 목표달성치에 주는 문화상품권 그에 따른 기부행위들이예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예산 지원의 근거들이.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 따라서, 현재 동 ‘저당 식생활 실천 및 인식 개선 등’의 ‘영양 관리 사업’이 「신체활동 조례」 정의규정 상의 ‘신체활동’이 아니라 해석되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근거규정을 「신체활동 조례」 제9조제2항으로 삼기 어려운 이상, 개정(안) 제11조제3항과 같이 ‘동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市 조례에 구체적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시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제1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112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동법 제112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행위와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임. (대법원 2009도9925 판결)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u>지방자치단체의 장</u>·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u>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u>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u>기부행위</u>”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u>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u>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u>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u> 4. <u>직무상의 행위</u>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동법 제11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열거하여 놓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257조제1항제1호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처벌되지 아니함.
- 그리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임.
- 다만, 대법원은 동 조문의 해석에 있어 아래 판시한 바와 같이 “엄격한 해석의 기초” 아래, “처벌이 되지 않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자체사업계획 및 예산 마련과 ② 별도로 존재하는 조례에서 ‘금품제공행위’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중략)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2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중략)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다가 일정한 액수의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게 되는 금품제공행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크다.

- 그리고 실제 OO군의 군수가 인근△△시와의 시·군 통합 문제에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자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버스투어”라는 명목으로 관내 선거구민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에게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후, 버스투어 참가자들이 각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등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들이므로 “관내 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라 항변한 “2009도9925 판결 사례”에서도,
- 대법원은 “위 버스투어가 자원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가 위 버스투어에 관련된 금품제공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조례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한 바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 제11조제3항과 같이 “영양관리 및 식생활 사업”과 관련성 있는 “시민영양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직무상 행위”로 인정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왜냐하면, 현재 「신체활동 조례」 제2조 및 제9조가 명시하고 있는 ‘몸을 사용하는 신체활동’에 ‘당류 저감’ 사업을 포함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사업’이 포함된다고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임.

시민영양 기본 조례 (안) 제11조 제3항 및 ‘조문 분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대상)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시민 - (기간)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 - (방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실제 참여한 실적, 횟수, 기여도 등과 연동하여 상품권, 물품, 활동비(금품) 등 제공 - (범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자가 사업에 실제 참여한 실적, 횟수, 기여도 등과 실적 연동이 인정되는 만큼만 지원 가능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관리사업을 영양관리사업의
에 포함하는 사항 (안 제11조제1항제7호 관련)
 - 최근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정책’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구조’가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영양 및 식생활 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정책 수단’에 더해 동 개정(안) 제11조제1항제7호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책 수단 도입’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고 사료됨.
- 시민이 ‘영양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안 제11조제3항 관련)
 - 현재 「신체활동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몸을 사용하는 신체활동’에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사업’이 포함된다고 해석되기 어려워, 동 「신체활동 조례」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움.
 - 따라서, 동 개정(안) 제11조제3항과 같이 “영양관리 및 식생활 사업”과 관련성 있는 “시민영양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직무상 행위”로 인정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인제 의원	2025. 5. 26.		보건복지위원회	
주요내용	〈개정 필요성〉 ○ 최근 고 당류 간식의 유행으로 아동·청소년 당류 과다섭취에 따른 건강문제 대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책이 시민에게 체감되고 건강 식습관 형성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 및 기여도에 따른 보상 지급 근거 마련 필요				
	〈주요 입법요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관리사업을 영양관리사업의 범주에 포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 시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3·4항 신설)				
추진경과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 최근 아동·청소년의 당류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관리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참여도에 따른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팀장	김수정(☎2133-4702)	담당	김영현(☎2133-4706)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6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성준, 남창진,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오금란, 유정희,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최근 고(高)당류 간식의 유행으로 아동 청소년의 당류 과다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손목닥터 9988 앱 등)을 활용한 올바른 당섭취 습관 형성 정책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고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 및 기여도에 따른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 식생활 관리사업을 영양관리사업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 나. 시민이 영양 식생활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국민영양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관리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1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 양·식생활 관리 사업</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 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 비,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 ④ <u>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 기 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제1항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관리 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예산설명서 등 확인결과 **기추진사업¹⁾**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시민건강국 2025년 <서울시민 저당 식생활 인식 개선(달달 9988)> : 640,067천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12.(연례반복)

◦ 지원대상 : 서울시민(집중관리군: 아동, 청소년, 청년층)

◦ 사업내용

- 특화 프로그램 아동

⇒ 청소년 대상 : 달달 원정대 프로그램 운영(손목타터9988 연계)